

	<h2 style="margin: 0;">학생회관 관리운영규칙</h2>		규정번호	3-1-13
			제정일자	1988.11.01
			개정일자	2011.05.13
			개정번호	Ver.2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원활히 운영하는 인격 도약의 장으로서 그 시설물 보호와 유지보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총장은 학생회관의 제반 사항을 통괄하고 감독한다.

제3조(이용제한) 학생회관의 동아리실 및 기타 시설물의 이용은 본교 학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과 부합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학생회관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각 동아리지도교수를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5조(개방시간) 학생회관의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요청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1. 평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월 ~금요일)
2.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토~일)
3. 지도교수의 사전승인 요청은 야간 잔류신청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학생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학생회관을 보호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의 단속을 엄중히 한다.(각종 버너, 전열기구를 사용한 취사금지)
2. 타학생의 자치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하며 특히 음주와 고성방가등을 엄중히 금하여야 한다.
3. 각 동아리실의 개인의 사물 보관소화를 막고 고의로 기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2)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